



제263회 임시회  
2007. 9. 12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9월 3일
-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 제안 이유

○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육대회의 종류(안 제2조)

(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3) 충청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나. 체육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하고, 수여대상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5조)

- (1)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는 표창에 대한 부상을 할 수 있는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 (2) 표창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고,
- (3)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라. 표창대상자 추천(안 제6조)

- (1)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추천함.
- (2) 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함.

마.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 검토 의견

### ○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06.12.20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도 교육감 선거시 학교운영위원의 간접 선출에서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향후 교육감 선출시 공직선거법을 준용<sup>1)</sup>하도록 규정하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

고 있으므로, 그간 시도 교육감이 지급하던 각종 체육대회 입상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금품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 이 제도를 보완하고자 공직선거법<sup>2)</sup>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학생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와 선수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등)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 나목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